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0
----------	-----

발의년월일 : 2019년 6월 27일

발 의 자 : 권수정, 이호대, 이성배,
이태성, 김달호, 권영희,
채인묵, 유 용, 임종국,
김용석, 서윤기, 이승미,
이상훈, 조상호, 김용연,
박기재, 이정인, 김경우 의원
(18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하여 소득 격차를 시정하여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 임원 연봉의 상한선 :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라.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확정된 후 고시 및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고 상한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고시 및 공시) 시장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확정된 후 1일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업무 보고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